



산별노조·지역지부·단위조직 선거사무안내서

선거일기간

세부 선거사무_현장투표



각 단위조직의 현장투표 세부안내는 11월 중 별도 투표사무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로 상세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 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투표일 전(前)

- 현장투표 투표기간과 안내문 현장공고
- 투표물품 수령
-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현장투표소 설치

01 현장투표 투표기간 · 안내문 현장공고 (11.14~11.20)

단위조직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공고_서식48~49호 합니다. 공고방법은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게시하는 것입니다.

- 11/21(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4(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2(수)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5(수)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3(목)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6(목)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4(금)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7(금)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5(토)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8(토)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6(일)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19(일)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7(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단위조직은 현장공고문을 11.20(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02 현장투표 선거인명부와 투표물품 지역본부로부터 수령 (11.14~11.20)

단위조직

- 수령 · 체크
 - 투표용지의 수량, 일련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투표함의 수량, 규격,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투표함 봉인스티커의 수량, 훼손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선거인명부의 투표구(소)별 발행 확인, 훼손 또는 누락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 일일투표록 · 투표결과보고서 · 회송봉투 등을 체크합니다.
- 사전숙지
 - 투표용지는 단위조직(투표구) 선거인 수 대비 100% 배포합니다.
 - 투표소별로 투표 중간에 투표중단시간이 있고 다시 재개할 때는 새로운 투표함 사용합니다.
 - 민주시민총 임원선거, 지역본부 임원선거, (동시선거하는) 산별노조(연맹) 선거 모두 하나의 투표함을 사용합니다.
 - 이동과정 중 선거인명부가 훼손되면 지역본부에 보고 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03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② (~현장투표날 전(前))

단위조직

조합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자가 지역본부로부터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에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단위조직의 조치사항

- ①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의 해당자 란에 줄을 긋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② 아래_서식64호 대로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연맹) 모두에 서면 보고합니다.

재적 선거인수 변경 전 (명)			재적 선거인수 변경 후 (명)		
연번	투표소 코드	투표소명	이름	사유	비고/동명이인 구분

산별노조(연맹)와 지역본부

위 보고를 취합하여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서면_서식65호 보고합니다.

선거인명부 누락자가 발견되더라도

- 민주노총 · 민주노총지역본부 2023직선의 선거인명부는 10/25(수)에 확정된 명단에 의거하며 조합 탈퇴 및 징계 등에 따른 명단 삭제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추가기재(임의로 등재) 등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역본부로부터 출력 배부된 선거인명부에 혹시 빠진 조합원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선거 재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누군가를 기재(임의등재)할 경우 해당 투표소가 일부재투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기재(임의등재)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04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직전)

▶ 투표소의 시설 및 설비 사전준비 조치

- ① **작업대 설치** : 신분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 → 투표용지 교부 등의 작업대입니다.
- ② **기표소 설치** : 기표소를 설치합니다.
- ③ **투표함 설치** :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 현장투표함 조립설치법은 추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④ **참관인 좌석 배치** : 참관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을 준비합니다.
참관인 대장_서식50호 을 출력하여 준비합니다.
투표 참관인용 패찰_서식51호 을 준비합니다.
- ⑤ **투표안내문_서식48호 게시** : 투표소 입구, 투표소 내부 등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력 게시합니다.

▶ 투표용지, 기타 투표관계서류의 준비

- ① 지역본부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한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교부용 작업대에 배치합니다.
- ② 일일투표록, 투표결과최종보고서, 투표용지 및 관계서류 봉함용 물품, 투표함 봉함용 스티커 등 투표관계서류를 준비합니다.
- ③ 일일투표록의 경우 투표 기간 동안 발생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서명·날인합니다.

▶ 기표소와 기표도구 설치

- ① **기표소** : 다른 이가 엿볼 수 없게 설치하고, 기표소 내부에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표소와 기표도구를 사전에 대여해도 됩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분리·독립 공간을 두고 이를 기표소로 사용해도 됩니다.
- ② **기표용구** : 반드시 동일한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기표용구만 사용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투표소가 제공·안내한 기표도구 외의 기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예시) ‘㉠’표 기구 또는 ‘ㅇ’표 기구 등 단위조직에서 자체 마련 (필기구로 직접 기재하는 방식의 기표 시 무효)

현장투표 일시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전 점검

- ① 매 회의 현장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1회 1개 투표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장투표 일시가 3회인 경우 3개의 투표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 ② 하루에 투표중단 시간(가령 식사시간 등)이 있는데 교대로 관리할 투표구선관위원이 없을 경우 투표중단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새로운 투표개시 때 새로운 투표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하루에도 2개 이상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③ 2일 이상의 투표 기간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투표구선관위원의 교대근무 관리로 투표중단 없는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1회 투표로 간주하여 하나의 투표함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③ 새 투표함 사용 때,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새 투표함에 조립용 테이프를 부착하여 투표함을 설치하고, 기표소 설치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 ④ 참관인이 없는 경우는 첫번째로 투표하는 선거인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장투표일 기간

- 현장투표 실시
- 투표상황 기록과 보고 등

05 선거인 신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단위조직

선거인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로 들어오면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
선거인 본인임이 확인되면,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하게 합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와 중앙선관위 청인 등 투표용지에 흠결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 후, 절취선에 맞춰 투표용지를 절단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구선관위원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기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기표소 내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투표내용이 공개될 경우 무효가 됨을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공개된 투표용지 처리 및 조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된 투표용지를 회수합니다.
공개된 투표용지를 준비된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그 봉투 앞면에 '공개된 투표용지'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해당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06 투표상황 기록과 보고

단위조직

투표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항을 일일투표록_서식54호에 기재하고, 해당 사항을 목격한 참관인·선거인 등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별노조 (연맹)와 지역본부

-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본부 및 지부)은 당해 현장투표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매일 16시에 투표구마다 확인하여 각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취합하여 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산별노조(연맹)의 지역조직(본부 및 지부)이 없는 지역본부는 지역본부가 직접 취합합니다.
- 지역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매일 16시에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종합 보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효율적인 현장투표율 집계를 위해 투표소 선관위원(선거사무원)이 직접 투표자 수를 입력할 수 있는 집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별 일일투표율 16시 보고 · 취합의 취지

- 7일의 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11/28(화)~12/2(토) 중 해당 선거구 투표를 1일 내지 5일 연장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마지막날인 11월 27일(월) 16시~17시 중 현장투표 투표율(지역본부 보고)과 전자투표 투표율(중앙 집계)을 합산하여 투표율 과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장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연장투표를 의결하여 공고합니다. 단, 이때 투표율을 감안하여 연장투표 기간을 정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앙 집계되는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투표율은 매일 16시에 단위조직→산별노조(연맹) 지역조직→지역본부→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07 투표참관

단위조직

각 현장투표소마다 후보자별로 1인씩 참관인을 두고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합니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참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1.6~11.12 사이에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승인하고 11/20까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관 제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관인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표참관인의 역할

- 입회 시작 및 종료 시 투표참관인 대장_서식50호 에 해당 시점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합니다.
- 패찰_서식51호 을 늘 잘 보이도록 착용합니다.
- 투표 개시 전 투표소 내 확인, 기표대 이상 유무 확인, 투표함 설치, 봉합을 참관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 권유 등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08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

단위조직

당일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루 중 중간에 투표중단 시간이 있는 경우도 해당 투표중단 시점에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을 앞둔 조치사항

- 투표 종료시각 5분 전, 투표소 입구에 투표구선관위원 혹은 투표사무원을 배치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 기준으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까지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투표소 입구를 폐쇄합니다.
- 투표 종료시각 이후 도착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선거인까지 투표를 마치면, 당일 또는 해당일시의 투표를 종료합니다.

▶ 투표함 봉인절차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함스티커를 사용하여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 참관인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 봉함에 참여한 마지막 투표자 또는 참관인은 참관인 대장_서식50호 에 서명·날인합니다.
- 단, 투표종료 시각에 참관인도 없고, 마지막으로 투표한 선거인도 없는 경우 투표구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은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참관인 없이 투표함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투표함 봉인법은 추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09 현장투표소가 미설치되었을 경우 조치

지역본부와 단위조직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지역본부가 확인하였고 그 확인 시점에 전체 선거일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거일 전날(11/20)까지 현장투표용품 수령을 하지 않은 곳도 동일 조치)

조치 사항

- ① 해당 선거인(들)을 '모바일투표 또는 ARS투표'로 정정해 남은 선거기간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조직과 시급히 협의합니다.

- ② 위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_서식57호 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에 '현장투표소 미설치에 따른 전자투표로의 투표방법 변경'을 요청합니다.
- ③ 위 통지를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모바일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ARS투표도 가능)로 정정합니다. 단 이때,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는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 ④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위 사실을 즉시 산별노조(연맹)에 통지_서식58호 합니다.
- ⑤ 이미 배부된 해당 투표소의 현장투표 선거인명부·투표함·투표용지는 자동 폐기 처리됩니다.

10 현장투표 당일 투표장소 변경 허용 특례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가령, 야외 장소로 예고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실내로 옮겨야 하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52조 2항 내지 3항대로, 지역본부선거위에 단위조직이 변경 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즉시 선거인에게 변경 장소를 공고하면 됩니다.

현장투표 종료 후

- 일일투표록 및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지역본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송부

11 일일투표록 및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단위조직

단위조직이 정한 현장투표 기간이 완전 종료되면, 매일의 일일투표록_서식54호 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_서식55호 를 작성 완료하여 각각 1부 복사(단위조직 보관용)합니다.

일일투표록과 투표최종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이 모두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12 지역본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송부

단위조직

잔여투표용지(훼손된 투표용지 포함)와 일련번호가 적힌 용지(이하 투표용지 일체)를 정리합니다.

투표용지 일체, 선거인명부, 일일투표록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원본, 투표참관인 대장을 회송봉투에 담습니다.

지역본부가 사전 안내한 곳으로 가서 인계하고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날인 합니다.

※ 단위조직이 지역본부에 투표관련서류 및 투표함을 회송할 때 직접 인계하여야 합니다. (퀵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이용 금지)